

요약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

□ **적용기간 :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까지**

○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

- (과태료 부과)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**운영자 및 이용자**
- (구상권 청구)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**감염 확산 시**

□ **조치사항**

구분 (1)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옹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 카페)	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	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핵심지표	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(명) (수도권) 100명 미만 (타권역) 30명 미만 (강원제주는 10명 미만)	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(명) (수도권) 100명 이상 (타권역) 30명 이상 (강원제주는 10명 이상)	※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담 30명 초과	전국 400명 ~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 ~ 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보조지표	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(명) (수도권) 40명 미만 (타권역) 10명 미만 (강원제주는 4명 미만)	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(명) (수도권) 40명 이상 (타권역) 10명 이상 (강원제주는 4명 이상)	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		
핵심 메시지	▲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 하 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	▲ 지역유행 시작,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	▲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자제	▲ 전국 유행 확산,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모임과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	▲ 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(주최)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(>1), 집단감염 발생 현황 (2.5~3단계)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					

구분 (2)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옹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 카페)	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	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마스크 착용	▲ 중점업종/시설 ▲ 대중교통 ▲ 집회, 시위장 ▲ 의료기관, 약국 ▲ 요양시설 ▲ 노인보호시설 ▲ 종교시설 ▲ 고위험시설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 지자체에 신고,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, 행사 ▲ 실내 스포츠 경기장	▲ 중점업종/시설 ▲ 대중교통 ▲ 집회, 시위장 ▲ 의료기관, 약국 ▲ 요양시설 ▲ 노인보호시설 ▲ 종교시설 ▲ 고위험시설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 지자체에 신고,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, 행사 ▲ 실내 스포츠 경기장 ※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, 카페는 50㎡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	▲ 실내 전체 ▲ 위험도 높은 실외* 활동 * 집회, 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	▲ 실내 전체 ▲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	
권고	▲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▲ 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	
모임·행사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 의무화	▲ (600명 이상 행사) 신고 협의 등 기준 준수 ▲ (집회, 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 행사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※ 대규모 콘서트 : 관중이 도회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m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(주최측 선택) ▲ 그 외 모임, 행사 및 식사 등반 자제 권고	▲ 100인 이상 금지 (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간, 집합, 모임 행사) * 동일목적, 동일장소, 일시적 모임 행사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시설면적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(100인 기준 미적용) <인천시> -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합금지 (2020.11.24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변경 <인천시 조정> -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합금지 (2020.10.1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현행유지 -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(2020.11.2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	▲ 50인 이상 금지	▲ 10인 이상 금지
스포츠 행사	- 관중 입장(50%)	- 관중 입장(30%)	- 관중 입장(10%)	- 무관중 경기	- 경기 중단

구 분 (3)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용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	3단계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중점관리시설 (9종) ①~⑥유흥시설5종 * (클럽, 토크쇼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클럽, 헌팅포차) ⑦노래연습장 ⑧살내댄싱공연장 ⑨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⑩식당,카페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※ 식당,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허가 신고면적 150㎡ 이상)	▲ 이용인원 제한 강화 ▲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<인천시 조정> 1) 유흥시설 5종* (시설면적 8㎡당 1명 인원제한, 테이블간 이동금지) ⇒ 8개 구만 적용 ※ 다만, 강화군, 용진군은 유흥시설(5종)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 유지 2) 식당,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허가 신고면적 50㎡ 이상은 11.21.(토) 0시 ~ 12.6. 24시 1.5 단계 조기시행) ▶ 단, 50㎡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	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▲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※ 음식점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※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	▶ (집합금지 3종) 1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) 노래연습장 3) 실내 스탠딩공연장	
	일반관리시설 (14종)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(교습소 포함)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, 워터파크 ⑩오락실,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 백화점 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⑭독사실,스터디카페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정상 운영하되,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) 마스크 착용 2) 출입자 명단관리 3) 환기, 소독	▲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), 좌석 띄우기 등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이용인원 제한 확대 /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※ 실내체육시설 (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)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▲ 위반 시 윈스트 라이크아웃제
기타 시설 (중점, 일반 23종 외 시설)	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	- 중점, 일반시설 외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이용인원 제한 (4㎡당 1명 등)		

구 분 (4)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용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,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	3단계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국공립시설	- 경륜,경마,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 로제한 -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(인원제한 없음) <인천시> 1) 정부방침 수용 ▶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 / 실내의 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없음 2) 일부 조정 ▶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▶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▶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- 경륜,경마 등 20%로 인원제한 - 이외 국공립시설 50%로 인원제한 <인천시 조정> ▶ 기존 조치 유지 1)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2)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- 경륜,경마 등 중단 - 이외 시설 운영 (30%) ※ 월미바다열차, 어린이과학관 : 30% 인원제한 운영	- 체육시설, 경륜, 경마 등 운영중단 - 이외 시설 운영 (30%)	-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
	<정부 방침>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<인천시> 감염병 추위예측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 기준 설정 * 단,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				- 휴관, 휴원 권고 - 긴급돌봄 등 유지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	-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마스크 의무화 -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 (물, 무알콜 음주는 허용) , 국제항공편 제외	- KTX 고속버스 등 50% 이하 예약제한 권고	- KTX 고속버스 등 50% 이하 예약제한	

구 분 (5)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※ 강화군, 용진군 제외 ※ 1.5단계 조기시행 11.21.0시~12.6.24시 (식당·카페)	2단계 2020. 11. 24.(화) 0시 ~ 12. 7.(월) 24시	2.5단계	3단계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종교활동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- 정규예배, 미사· 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- 모임 식사자제 권고 - 숙박 행사 금지	<인천시 조정> - 정규예배, 미사· 법회 등 좌석수의 50% 이내(좌석 수 띄우기)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 (정부방침) -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 (3m 이상) 아크릴 판 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 :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※ 강화군, 용진군 이 1단계 현행유지 에도 공통 적용	- 정규예배, 미사· 법회 등 좌석수의 20% 이내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비대면 20명 이 내로 인원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1인 영상만 허용 - 모임·식사 금지
학교·유치원	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1/3 원칙(고등 학교 2/3)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	밀집도 1/3 준수	원격수업 전환
직장근무	▶ 공공기관 - 기관·부·별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5) ▶ 민간기업 -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/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접·밀집 사업장(콜 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3) -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·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 :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	-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권고	-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	

□ 우리 시 행정조치 현황

○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1차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2. / (시행)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 ▶ (2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 시행) 2020. 11. 13. 0시 ※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 ▶ (3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과태료 처분 시행기간) 2020. 11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○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※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▶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 ▶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11. 24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○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 - (과태료)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
○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행정조치 [조치 해제] 2020. 9. 14. 0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
○ 인천시 소모임 자체 권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적용기간) 2020. 11. 23. 0시 ~ 별도 해제 시

□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

구 분	대 상 시 설
전자출입명부 의무화	▶ 중점관리시설(9종) - 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홍보관, 식당·카페 ※ 다만 식당·카페(는 12. 6.까지 계도기간 부여 - 이후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시, 12. 7.부터 과태료 부과
출입명부 의무화 (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)	▶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▶ 일반관리시설(13종) -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 등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독서실·스터디카페 ※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

참고 1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파태로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■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섭취 금지
실내 스탠딩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증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시설 내 음식(음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■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■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	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· 제과점영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(시설 허가신고면적 50㎡ 이상) -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■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■ 음식점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<p><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용 집계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증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p><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

참고 2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 관련 FAQ

Q1.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,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
- 여기에서 '테이블'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,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Q2.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/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?

- 칸막이·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,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
- 또한,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·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

Q3.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, 일부 공간은 좌석/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?

-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
- 예를 들어, 룸(room)과 홀(hall)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,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

Q4. 식당·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?

-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
- 다만, 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실시함

거리두기 2단계 식당·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

<중수본 생활방역팀, '20.11.23(월)>

구분	대 상	적용 수칙 (관리자·운영자)
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프랜차이즈형 카페* *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(커피 외)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■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공동적용 방역수칙 의무화
식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-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■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(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~ 익일 05시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 ▶ 뷔페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용 집게·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▶ 공동적용 방역수칙 의무화
공동 적용 방역수칙		
카페·식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	

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결혼식장, 장례식장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개별 결혼식·장례식 당 100명 미만*으로 인원 제한 ※ 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*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⇒ 단, 멀티방은 8㎡ 미만인 경우, 1실당 1명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²당 1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영화관·공연장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학원(독서실 제외, 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▶ ①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,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* ①안 ②안 중 선택 *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이·미용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<p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독서실·스터디카페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▶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<p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PC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▶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놀이공원·워터파크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**상점·마트·백화점**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**이용자**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참고 4 **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**

< 집합·모임·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**이용자**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< 전시회, 박람회, 국제 회의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관련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**이용자**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참고 5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도 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■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■ 방역관리자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도 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참고 6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콜센터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▶ 방역관리자 지정 ▶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▶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유통물류센터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▶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 ▶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 ▶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▶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참고 7

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

○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**운송수단**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이용자 수칙

- ▶ 마스크 착용
-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**인천광역시**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